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조)

나.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